



# 기 술 정 보



기술정보지 통권 제68호 (2018년 3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 김해서부소방서 조감도 >

## 목 차

<p><b>■ 건설 관련 소식</b> .....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중앙1군 건설대기업영남지사장 간담회 개최</li> <li>- 김경수 도지사-국가건축정책위원회, 경상남도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li> <li>- 경상남도,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시행 협약 체결</li> </ul> <p><b>■ 국토교통 뉴스</b> .....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li> <li>-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li> <li>-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li> </ul> <p><b>■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b> .....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i> <li>-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i> <li>-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li> </ul>	<p><b>■ 신기술 정보</b> .....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851호)</li> <li>-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DT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 방법(854호)</li> </ul> <p><b>■ 2018년 건설기술심의 현황</b> ..... 17</p> <p><b>■ 기술인 나눔 정보</b> .....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행 일정</li> <li>-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li> <li>-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li> <li>-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li> </ul>
--------------------------------------------------------------------------------------------------------------------------------------------------------------------------------------------------------------------------------------------------------------------------------------------------------------------------------------------------------------------------------------------------------------------------------------------------------------------------------------------------------------------------------------------------------------------------------------------------------------------------------	--------------------------------------------------------------------------------------------------------------------------------------------------------------------------------------------------------------------------------------------------------------------------------------------------------------------------------------------------------------------------------------------------------------------------------------------------------------------------

### 경상남도,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 개최

- 11월8일(목),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 간 상생 협력 도모
-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등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 방안 중점 논의

경상남도가 8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14개 대형건설업체 영남지사장 및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는 영남권에 지사를 둔 대형 건설사 협의체로, 현재 14개 건설사\*가 속해 있다.

\* 14개 건설사 : 현대건설,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경상남도가 발표한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및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 등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지역중소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지원 사업 이후 신규로 등록한 25개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형건설사와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공사현장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홍선 고려개발(주) 영남지사장은 “경상남도의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대응방안이 그동안의 홍보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향후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시에는 지역공동도급 참여뿐만 아니라 하도급 참여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손명용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대형 건설업체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충사항도 적극 수렴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3)

### 김경수 도지사-국가건축정책위원회, 경상남도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 5일(수) 도지사 집무실, ‘공공건축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위원 5명 경남도청 방문
- 경상남도, 공공건축 혁신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추진
- 김경수 도지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건축 혁신방안 마련할 것”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에도 각별한 관심 가져줄 것” 위원회에 요청하기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5일(금) 경상남도를 방문했다.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혁신방안 간담회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위원 5명, 경상남도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 혁신방안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상남도는 도내 공공건축 현황을 보고하고, 공공건축 혁신방안 및 지역공공건축 추진상황과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자문, 현행 공공건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에는 향후 공공건축 혁신방안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위원들과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 9대 혁신과제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and 도시재생과 연계한 생활SOC 발굴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과 정책 내용들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건축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과제의 내용을 관라조정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주요 정책심의, 관계부처 건축정책 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2008년 1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현재 승효상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 자료 : 도 건축과(O55-211-4342)



## 경상남도,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시행 협약 체결

-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시작으로 혁신도시 시존2 박차도, 도서관·수영장·공연장 등 갖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위해 18일 도교육청, 진주시, LH와 협약 체결 가져
- 김경수 도지사 “복합문화도서관이 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진주 혁신도시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고 경남의 혁신발전 동맥이 되도록 노력할 것”

경상남도는 18일 도교육청, 진주시, LH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의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가졌다.

18일 오전 LH 남강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 박종훈 도교육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조규일 진주 시장, 박상우 LH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12월 진주시 충무공동에 들어설 계획인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은 도서관, 수영장 및 공연장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총사업비는 5백억 원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협약식이 추진을 위해 그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LH와 도교육청, 진주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복합문화도서관은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혁신도시에 걸맞는 도서관 건립을 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진주 혁신도시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고 경남의 혁신발전 동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경남혁신도시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선도와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으로 新지역 성장거점이 될 것이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박상우 사장은 “복합문화도서관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과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라고 밝히는 등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경남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금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경남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부지면적 7,875㎡, 건축연면적 15,000㎡)은 도서관과 공연장(400석 규모), 수영장(25m 6개 레인)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2021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 자료 : 도 서부정책과(O55-211-6073)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 발주청 안전관리업무 강화,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등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7.12)」의 후속조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 도입

○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 이행한 발주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 ②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하였다.

\* (현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추가)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 우려

③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④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중대 건설사고 → 모든 건설사고)

-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하였다.

\*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며, 본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O44-201-3573, 4529, 3574, 3582)

##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12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윤관석 의원, 11.7 발의) +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박덕흠 의원, 11.9 발의)
-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 \*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설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 공정경쟁 저하, 폐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 \*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건설 선진화방안('09) 등
-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6.28, 경제장관회의)하고,
  -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 건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1차관 ·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운영('18.4~)

- 종합 · 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7.25, 11.7)**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 이에 따라 **종합 · 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건산법 개정 관련 종합 · 전문건설협회 보도자료 배포(12.7.)

- **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 · 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 · 전문 상호시장 개방

-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

□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발주자 직불 의무화, 불법하도급 5년 3회 등록말소 등(강훈식 의원, 1.26발의)



-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 \*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 법률개정에 앞서 '18년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전면 적용한 결과,
-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추석 체불현황 점검(2,856개 현장 전수 조사)에서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 ('18) 설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계약건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금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O44-201-3497,3514)

##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수도권 등 5개권역 동시 고강도 점검...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11.20)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11.3)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 \*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

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히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타워크레인 관련 신고 및 제보 연락처: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 또는 국토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2, 354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7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조종사의 건설기계 조종을 예방하며, 또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안 제5조 및 제6조)

- 1) '17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과제로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와 동일한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규정

나. 검사총괄기관의 타워크레인 정기·수시검사업무 배제(안 제10조의3)

- 1) 법률에서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수행할 없는 검사업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 2) 검사총괄기관은 다른 검사기관이 수행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므로, 타워크레인의 정기 및 수시검사업무는 직접 수행할 없도록 규정함
- 3)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

다.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안 제12조의3)

-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 2)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
- 3) 타워크레인 및 부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기계분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장 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

라.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규정(안 제12조의4)

-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타워크레인의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마.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받도록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절차를 규정함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부품인증 업무 위탁(안 제18조의3)

-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위탁하고, 부품인증 업무는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함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6)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주)한국산업안전, (주)KI기술, 한국산업안전검사(주)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의4)

- 1)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mailto: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4, 354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8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이 확인자란을 신설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팩스 : 044-201-5551)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80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시 청구하는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발주청 장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발급하는 경력확인서의 처리기간을 설정 및 보완요구, 발급거부 요건을 신설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 경정, 인정 등에 대한 민원 등 분쟁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발주청 경력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신고토록 신고기준을 세분화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팩스 : 044-201-5551)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 □ 고시번호

- 제2018-257호(2018. 5 8.)

### □ 신기술 개발자

- (주)이왕코리아, 이케이플래시건설(주), (주)다누리건설

###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51
- 기술분류 :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 □ 범위

- 직경 300mm~1,750mm의 원형 관로를 대상으로 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 인장력을 높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 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 섬유층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격자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및 유리섬유 용착 시트로 구성된 함침 튜브를 사용한 광경화 방식의 하수도 관로 비굴착 갱생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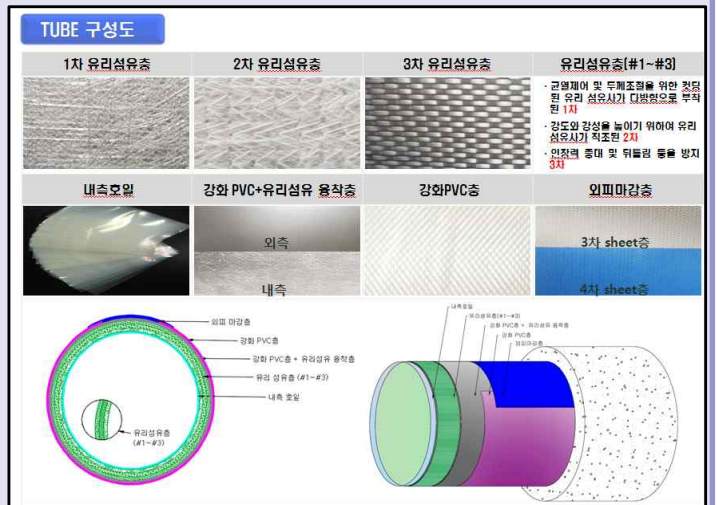
### □ 내용

- 이 신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내진성을 확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공 두께를 줄여 통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튜브의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으며,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 □ 보호기간

- 2018/11/08 ~ 2026/11/07



### <신기술의 기본 개념 및 시공방법>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91)



##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DT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 방법

### □ 고시번호

- 제2018-727호(2018. 12. 07.)

### □ 신기술 개발자

- (주)드림인테크, (주)대영엔지니어링, (주)세광종합기술단

###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54
- 기술분류 : 토목>항만 및 해안>항만부속시설  
토목>항만 및 해안 > 방파제

### □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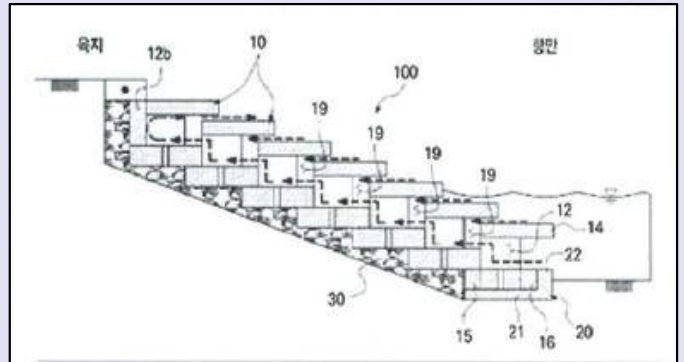
-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되어 계단식으로 시공되었을 때, 3m미만의 파도가 계단의 정면과 좌우측 상부 및 후면으로 유도되면서 감소되는 구조로, 공극률은 48 퍼센트이고 블록 하부에는 양압력 해소 구멍을 설치한 연안의 재해를 저감하는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 방법

### □ 내용

- 이 신기술 D.T소파블록은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되어 파도를 유도하면서 소멸시키는 구조로 블록 공극 극대화로 사용량을 줄이고 체결의 원활화로 계단식 곡선구간 시공이 가능하여 조류 및 파랑으로 비롯하여 구조물의 세굴현상으로 이어지는 침식을 방지하고 월파로 주는 피해를 줄여주며 해양 친화적이며 이용자들의 수변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전층연결 유공구조의 친수형 소파블록 시공방법이다.

### □ 보호기간

- 2018/12/07 ~ 2026/12/06



④ 속채움사석투어맞고르기	⑤ 2단 DT소파블록설치	⑥ 속채움사석투어맞고르기
① DT소파블록제작 (현장또는 공장제작)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및양생	③ 1단 DT소파블록설치
⑦ 4부리단 DT소파블록설치	⑧ 상치철근조립및콘크리트타설	⑨ 시공완료된 DT소파블록

### <신기술의 기본 개념 및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91)

## 2018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1)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1회 '18.1.26	실시설계 (타당성)	산청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공사내용 : 도로개설 L=934m · 공 사 비 : 292억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20년	산청군 (안전건설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통영 통제영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통영시 문화동 159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지하2층, 지상 2층 규모 체험관, 홍보관, 주차장 설치 · 공 사 비 : 143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19년	통영시 (지역경제과)	조건부 채택
제2회 '18.2.23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재활용단지 내 · 공사내용 : 바이오에너지화시설 200톤/일 · 공 사 비 : 285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20년	창원시 (환경위생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채택
제3회 '18.3.7	실시설계 (타당성)	함안 가야 공공하수처리시 설 증설사업	· 위 치 :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장 증설(Q=3,200m <sup>3</sup> /일) · 공 사 비 : 113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20년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함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병곡면, 유림면 일원 · 용역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비 : 24억 원 · 용역기간 : 2018년 ~ 2021년	함양군 (상하수도 사업소)	조건부 채택
제4회 '18.3.30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양산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양산시 일원 · 용역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비 : 8.5억 원 · 용역기간 : 2018년 ~ 2019년	양산시 (도로시설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정성)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 위 치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일원 · 용역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비 : 15.6억 원 · 용역기간 : 2018년 ~ 2020년	하동군 (체육시설 사업소)	조건부 채택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 일원 · 공사내용 : 광역자원회수시설(130톤/일) · 공 사 비 : 513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21년	통영시 (환경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양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양산시 중앙동 등 5개소 · 공사내용 : 하수관로 정비 1식 · 공 사 비 : 174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19년	양산시 (하수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밀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밀양시 삼랑진읍 등 4개소 · 공사내용 : 하수관로 정비 1식 · 공 사 비 : 137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20년	밀양시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사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 위 치 : 사천시 사천읍 등 3개소 · 공사내용 : 하수관로 정비 1식 · 공 사 비 : 107억 원 · 공사기간 : 2018년 ~ 2020년	사천시 (하수도사업 소)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4

## 2018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2)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5회 '18.4.27	실시설계 타당성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777번지 ·공사내용 : 지하1층, 지상3층 등 ·공사비 : 271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19년	진주시 (도시개발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일원 ·용역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비 : 12억원 ·용역기간 : 2018년~2020년	남해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통영 마동~학림간 연륙보도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일원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비 : 9.6억원 ·용역기간 : 2018년~2019년	통영시 (건설과)	조건부 채택
제6회 '18.5.9	실시설계 타당성	봉강~무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지30호선)	·위 치 : 창원시 동읍~밀양시 무안면 ·공사내용 : 도로 확포장 L=8.98km ·공사비 : 665억원 ·공사기간 : 2019년~2024년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초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위 치 : 밀양시 초동면 일원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7.74km ·공사비 : 263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	조건부 채택
제7회 '18.5.2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비 : 12억원 ·용역기간 : 2018년~2020년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둔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위 치 : 거제시 둔덕면 일원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5.3km ·공사비 : 130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송곡·반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위 치 : 진주시 금곡면, 이반성면 일원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4.2km ·공사비 : 130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함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일원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4.93km ·공사비 : 111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다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위 치 : 의령군 공류면 일원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3.4km ·공사비 : 155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의령 신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 치 : 의령군 봉수면, 부림면 일원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6.48km ·공사비 : 289억원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의령군 (안전관리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4

## 2018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3)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8회 '18.6.2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실용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김해시 주촌면 일원 ·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비 : 12억원 · 용역기간 : 2018년~2020년	김해시 (건축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일원 · 공사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 공사비 : 170억원 · 공사기간 : 2018년~2020년	남해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화개지구 하천해제예방사업	·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 정비 L=9.8km · 공사비 : 165억원 ·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	조건부 채택
제9회 '18.7.27	실시설계 타당성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 위 치 : 고성군 고성읍 일원 · 공사내용 : 지상13층, 연면적 6,950㎡ · 공사비 : 141억원 · 공사기간 : 2018년~2020년	고성군 (도시개발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위 치 : 고성군 고성읍 일원 ·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비 : 13억원 · 용역기간 : 2018년~2020년	고성군 (도시개발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 위 치 : 거제시 고현동, 연초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장 증설 13,000㎡/일 · 공사비 : 406억원 · 공사기간 : 2018년~2022년	거제시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 위 치 : 거제시 고현동, 연초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수관 굴착개량 32km 등 · 공사비 : 328억원 · 공사기간 : 2018년~2021년	거제시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제10회 '18.8.24	실시설계 타당성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일원 · 공사내용 : 힐링센터, 공원, 진입도로 · 공사비 : 105억원 · 공사기간 : 2018년~2020년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양산시 도로건설관리계 획 수립용역	· 위 치 : 양산시 일원 · 용역내용 :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 용역비 : 8.5억원 · 용역기간 : 2018년~2019년	양산시 (도로시설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대합일반산업단지~ 대합미니복합타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 위 치 : 창녕군 대합면 일원 · 공사내용 : 도로개설 L=1.48km · 공사비 : 134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0년	창녕군 (경제도시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위 치 : 함안군 가야읍 일원 · 공사내용 : 생태하천 조성 L=7.63km · 공사비 : 282억원 · 공사기간 : 2018년 ~2021년	함안군 (안전총괄과)	조건부 채택
제11회 '18.9.1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김해시민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비 : 8.3억원 · 용역기간 : 2018년~2019년	김해시 (관광과)	조건부 채택
제12회 '18.10.26	실시설계 타당성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 위 치 : 창원시 일원 · 공사내용 : 노후하수관거 교체·보수 · 공사비 : 454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1년	창원시 (하수시설과)	조건부 채택
제13회 '18.12.14	실시설계 타당성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 위 치 : 양산시 원동지구 · 공사내용 : 상수관로 L=113km · 공사비 : 308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0년	양산시 (수도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4



## □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기 시험 (면 시 험)	합격자 발표
		인 터 넷			인 터 넷	방문제출 (휴일제외)		
기술사	제117회	1.4~1.10	1.27(일)	3.8	3.4~3.13 (휴일 제외)	3.4~3.21 (휴일, 3.18 제외)	4.13 ~4.22	5.3
	제118회	4.12~4.18	5.5(일)	6.14	6.17~6.20	6.17~6.26 (휴일제외)	7.13 ~7.22	8.2
	제119회	7.19~7.25	8.10(토)	9.11	9.16~9.19	9.16~9.25 (휴일제외)	11.2 ~11.11	11.22
기능장	제65회	1.25~1.31	3.9~3.10 (토, 일)	3.14	3.15~3.21 (휴일, 3.18 제외)	3.15~3.27 (휴일, 3.18 제외)	4.13 ~4.26	5.3(1차) 5.24(2차)
	제66회	6.21~6.27	7.13~7.14 (토, 일)	7.19	7.22~7.25	7.22~7.31 (휴일제외)	8.24 ~9.6	9.20(1차) 9.27(2차)
기사 (산업기사 · 서비스)	제1회	1.25~1.31	3.3(일)	3.14	3.15~3.21 (휴일, 3.18 제외)	3.15~3.27 (휴일, 3.18 제외)	4.13 ~4.26	5.3(1차) 5.22(2차)
	제2회	3.29~4.4	4.27(토)	5.17	5.20~5.23	5.20~5.29 (휴일제외)	6.29 ~7.12	7.19(1차) 8.16(2차)
	제3회	7.5~7.11	8.4(일)	8.30	9.2~9.5	9.2~9.11 (휴일제외)	10.12 ~10.25	11.1(1차) 11.22(2차)
	제4회	8.16~8.22	9.21(토)	10.11	10.14~10.17	10.14~10.23 (휴일제외)	11.9 ~11.22	11.29(1차) 12.20(2차)
기능사	제1회	1.4~1.10	1.19~1.27	2.1	2.18~2.21	해당없음	3.23~4.5	4.19(1차) 4.26(2차)
	제2회	3.22~3.28	4.6~4.14	4.19	4.29~5.3 (5.1 제외)	해당없음	5.25~6.7	6.21(1차) 6.28(2차)
	X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5.7~5.10	해당없음	6.15~6.28	7.12(1차) 7.19(2차)
	제3회	6.21~6.27	7.13~7.21	7.26	7.29~8.1	해당없음	8.24~9.6	9.20(1차) 9.27(2차)
	제4회	8.23~8.29	9.28~10.6	10.18	10.28~10.31	해당없음	11.23~12.6	12.20(1차) 12.27(2차)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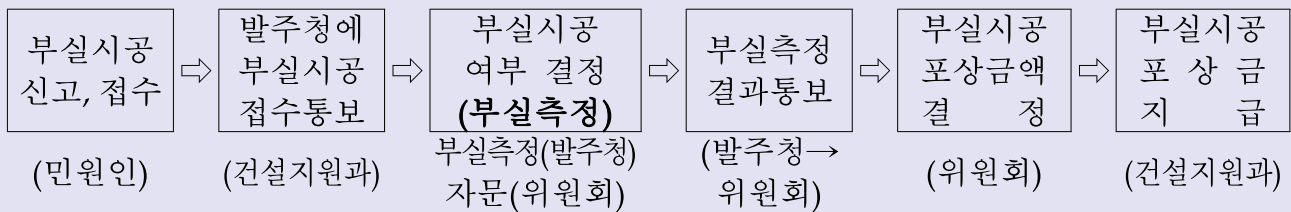
###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도급액 10억이상 건설공사
- ※ 대상공사 : 건설정보(www.gyeongnam.go.kr) 홈페이지에 게재

### II. 부실시공 내용

- 주요 구조물의 시공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등

### III. 처리절차



### IV. 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1등급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2등급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3등급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 ※ 부실벌점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 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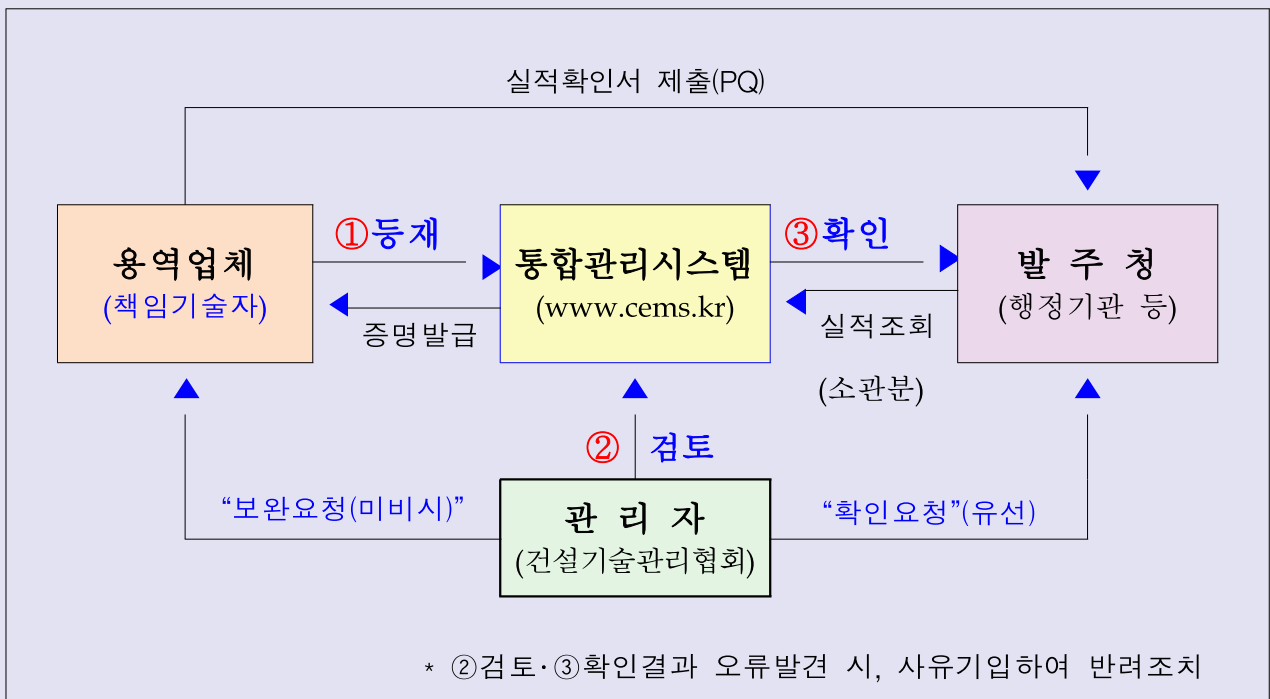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5)

##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http://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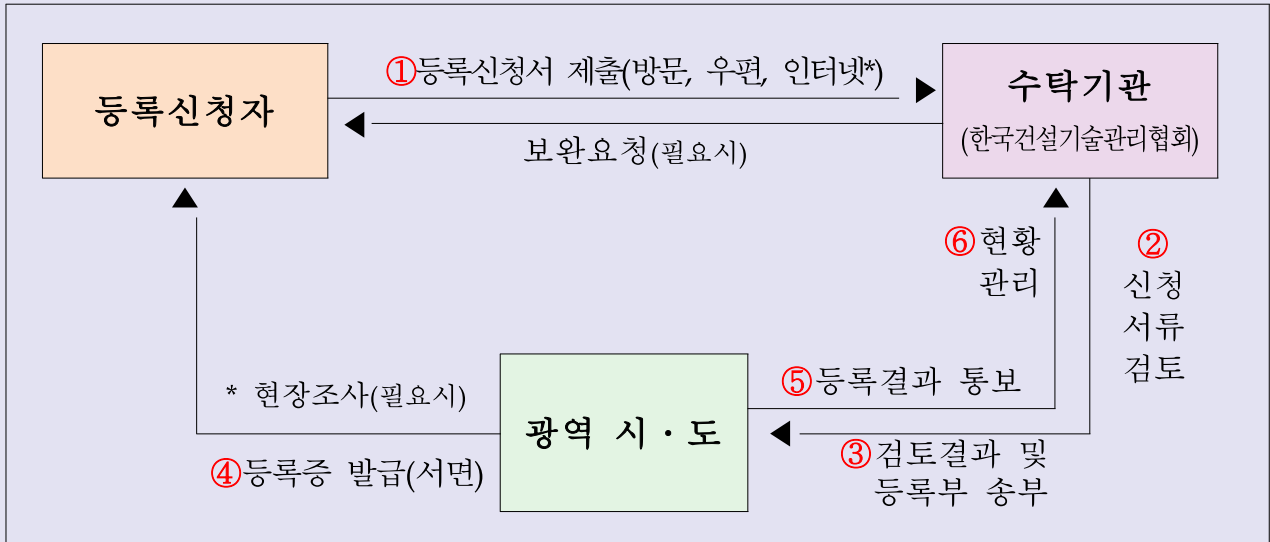
###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③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④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⑤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⑥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O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설정보>기술정보지)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naminan@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